

●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-0058호

「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」 고시 일부개정(안)을 행정예고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2월 29일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「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」 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「공연법」에 따른 “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(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-13호)”과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“KS A 6108(무대시설물의 자체 안전검사)”를 일치화하여 무대시설 안전진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구동 무대기계·기구가 있는 경우, “무대시설 자체 안전검사 기준”을 ‘상부 무대시설’과 ‘하부 무대시설’로 구분하고, 검사기준을 ‘외관’, ‘체결 및 고정 상태’, ‘작동 검사’로 구분(안 [별표 4])
- 나. 구동 무대기계·기구가 없는 경우, “무대시설 자체 안전검사 기준” 중 ‘검사기준’을 ‘외관’, ‘체결 및 고정 상태’로 구분(안 [별표 4의1])
- 다. 자체 검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검사 방법 삭제(안 [별표 4], 안 [별표 4의1])
- 라. “무대시설 자체 안전검사 기준” 개정에 따라 공연장 자체 안전검사표 개정(안 [별지 제1호서식], 안 [별지 제1호의1서식]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- 나. 성명(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,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
- 전자우편 : shinyjade@korea.kr
- 팩스 : (044)203-3475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(전화 (044)203-2744, 팩스 (044)

203-347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